

# 뱅크월렛 서비스 이용약관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뱅크월렛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고객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뱅크월렛”이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모바일현금카드와 뱅크머니의 발급, 결제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멤버십, 포인트, 쿠폰정보 안내, 선물하기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2. “현금카드”란 은행에서 회원의 예금계좌와 연결하여 발급하며, 동 계좌 정보가 수록되어 현금인출 등의 기능이 있는 IC칩 기반의 카드를 말합니다.
3. “모바일현금카드”란 회원이 은행으로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칩 등에 전자적으로 발급받아 뱅크월렛을 통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말합니다.
4. “뱅크머니”란 뱅크월렛을 통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회원이 은행으로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USIM칩 등에 전자적으로 발급받은 “NFC형뱅크머니”와 충전식 선불계정으로 발급받은 “네트워크형 뱅크머니”를 포함합니다.
5. “회원”이란 뱅크월렛 발급 웹페이지(이하 “웹페이지”라 합니다) 또는 뱅크월렛에서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발급을 정상적으로 마쳐 은행과의 이용계약이 성립한 자를 말합니다.
6. “가맹점”이란 본 서비스에 따라 회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은행과의 가맹점 계약에 따라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을 승인받은 업소, 시설 등을 말하며, 온라인 가맹점을 포함합니다.
7. “USIM칩 등”이란 스마트폰에 내장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에서 발행하는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범용 가입자 인식모듈)과 금융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보안체계가 구현되어 있는 스마트폰 전용 별도 저장장치인 금융microSD를 말합니다.
8. “애플릿”이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9. “지갑비밀번호”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의 본인확인에 사용하는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을 말하며, 숫자 6~8자리로 이루어집니다.
- 9의 2. “뱅크머니PIN”이란 네트워크형 뱅크머니를 통한 충전, 환불, 결제 등의 서비스 이용 시 발급은행의 인증을 위해 이용되는 PIN을 말하며, 네트워크형 뱅크머니 발급 시 고객이 설정하는 숫자 4자리로 이루어집니다.
10. “발급”이란 회원이 웹페이지 또는 뱅크월렛을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밟아 모바일현금카드, 뱅크머니의 이용을 신청하고 USIM칩 등에 애플릿을 다운로드 받아 탑재하거나 충전식 선불계정으로 발급받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11. “충전”이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뱅크월렛, 은행의 자동화기기(이하 "CD/ATM"이라 합니다), 컴퓨터, 구매단말기 등 은행이 정한 기기(이하 “가치저장단말기”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계좌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출금하여 은행이 정한 방법을 통해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재원을 뱅크머니에 가치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자동충전”이란 회원이 미리 설정해 놓은 조건에 의하여 계좌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출금하여 뱅크머니에 가치를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결제”란 회원이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본 서비스를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환불”이란 은행이 회원의 신청에 따라 뱅크머니 잔액 범위 내의 일정액을 충전 시 사용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말하며 “내 계좌로”로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 14의2. “대금환불”이란 모바일현금카드 또는 뱅크머니 거래 후 회원의 반품 등의 이유로 거래를 취소하고 고객에게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친구에게 보내기”란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뱅크머니 잔액 범위 내의 일정액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16. “청구하기”란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일정한 뱅크머니 납부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17. “수수료”란 회원이 본 서비스에서 발급, 충전, 자동충전, 환불, 친구에게 보내기 등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18. “부가서비스”란 모바일현금카드, 뱅크머니를 통한 결제, 충전, 환불, 친구에게 보내기 등의 기능 외에 서비스 내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멤버십, 쿠폰 등의 가입, 발급, 구매, 이용 등에 관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19. “제휴사”란 은행 또는 은행이 위탁한 제3자와의 계약하에 회원에게 모바일메신저 회원정보 연동,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20. “멤버십”이란 회원과 은행, 제휴사 또는 제휴사의 협력업체 등(이하 “멤버십 제공자”라 합니다) 간에 체결된 멤버십 서비스 이용계약에 근거하여 회원이 멤버십 제공자로부터 편의를 제공받는 자격을 말합니다.
21. “쿠폰”이란 은행, 제휴사 또는 제휴사의 협력업체 등(이하 “쿠폰제공자”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고객의 스마트폰에 모바일쿠폰 형태로 발급된 것을 말합니다.
22. “포인트”란 회원과 제휴사 간에 체결된 포인트 이용계약에 근거하여 제휴사 또는 제휴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 등을 구입하는 경우 적립/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3. “선물하기”란뱅크월렛을 통하여 제휴사가 운영하는 사이버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3조(서비스의 내용)

- ① 본 서비스의 기본 기능은 발급, 충전, 결제, 환불, 친구에게 보내기, 청구하기, CD/ATM 이용 등입니다.
- ② 부가서비스는 멤버십, 쿠폰, 포인트, 선물하기로서 멤버십 및 쿠폰은 멤버십제공자 및 쿠폰제공자가 제공하며, 포인트 및 선물하기는 제휴사가 직접 제공합니다.

##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 ① 웹사이트의 서비스 화면 또는 뱅크월렛에 게시된 본 약관에 동의함 버튼을 선택하여 동의 의사를 전송하고 사용자 인증절차를 완료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② 이용계약은 제1항의 약관 동의를 포함하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제6조의 방식으로 은행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제5조(이용신청)

- ① 이용신청은 고객이 회원이 되어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객이 수행하는 절차로서, 뱅크월렛을 다운로드 받은 후 모바일현금카드 또는 뱅크머니 발급을 위해 웹사이트 또는 뱅크월렛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사용자 인증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서비스는 제휴사의 회원정보와 연동하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뱅크월렛을 통한 이용신청 과정에서 제휴사 서비스 로그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뱅크머니
  2. 부가서비스 (멤버십, 쿠폰, 포인트, 선물하기 등)
- ③ 회원이 스마트폰 번호변경, 신규가입 등 스마트폰 서비스 관련 계약사항 변경으로 USIM칩 등을 교체하거나 애플릿을 삭제하고 재설치한 경우 제1항의 인증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 제6조(이용신청의 승낙)

은행은 제5조에 따른 유효한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내역에 대한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회원의 USIM칩 등에 서비스 이용을 위한 애플릿과 계좌정보를 발급하거나 선불계정 발급 승인을 처리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 제7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은행이 정한 서비스 제공환경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사용 등 이용신청 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3. 이용신청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4. 14세 미만 아동, 단, 만 19세 미만의 회원의 경우 청소년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법인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6. 제휴사의 회원정보와 연동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제5조 제2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 시 제휴사 서비스 로그인을 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7. 기타 은행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 ② 서비스는 고객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및 USIM칩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스마트폰·USIM칩 등이 아닌 경우 및 스마트폰 명의 변경(USIM 등 양도를 포함)으로 인하여 기존에 타인의 명의로 본 서비스가 이용된 이력이 있는 USIM칩 등을 소유한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제3장 서비스 이용

### 제8조(서비스의 이용개시)

- ① 제6조에 따라 은행이 고객의 이용신청을 승낙함과 동시에 고객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이 되며, 이때부터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0-약관-051호(2020.03.31)

은행은 회원에게 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회원은 본 서비스 가입 후 멤버십, 쿠폰, 포인트, 선물하기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에게 별도 또는 추가적인 가입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각 서비스별 이용약관 등이 본 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제9조(서비스의 이용시간)

- ① 본 서비스의 이용은 은행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운영상의 필요성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 동안 본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본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웹페이지 또는뱅크월렛을 통해 공지합니다.

#### 제10조(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 ① 은행은 수시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기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웹페이지 또는뱅크월렛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 3.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4.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 회원이 은행의 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6. 제휴사와의 계약종료 등 은행의 제반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7.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제2항에 의하여 본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본 서비스가 중단(은행 또는 운영자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되어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제휴 부가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은행은 웹페이지 또는뱅크월렛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고지하며, 중단 이후 부가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각 제휴사(멤버십제공자 및 쿠폰제공자 포함)의 정책 및 약관에 따릅니다.

#### 제11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① 은행은 본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웹페이지 또는뱅크월렛에 게재하거나 SMS, Push Message, 모바일메신저 메시지 등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본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및 광고를 웹페이지 또는뱅크월렛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지식재산권)

- ① 은행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본 서비스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은행에 귀속합니다.
- ② 회원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본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제13조(인증방법)

- 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방법은 각 메뉴에 따라 지갑비밀번호,뱅크머니PIN, 휴대폰인증, ARS인증, 실명인증, 계좌비밀번호, OTP,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이하 "인증수단"이라 합니다)이 이용되며, 인증수단의 종류가 변경될 경우 은행은 웹페이지 또는뱅크월렛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고지합니다.
-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최초 발급 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갑비밀번호,뱅크머니PIN을 등록하여야 하며, 사용 중뱅크월렛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인증수단의 오류 입력 횟수를 초과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④ 지갑비밀번호,뱅크머니PIN 분실시 웹페이지 또는뱅크월렛을 통해 은행이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제4장 모바일현금카드

#### 제14조(모바일현금카드 발급)

- ① 모바일현금카드는 회원이 은행 영업점에서 발급받은 현금카드의 계좌와 연결하여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됩니다.
- ② 모바일현금카드 발급은 웹페이지와 고객의 스마트폰을 통한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15조(모바일현금카드 관리)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0-약관-051호(2020.03.31)

- ①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은 모바일현금카드를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 ③ 회원은 모바일현금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6조(모바일현금카드 해지)**

- ① 모바일현금카드의 이용 중지를 원하는 회원은 웹페이지와 회원의 스마트폰을 통해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웹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 ② 서비스를 제공받는 USIM칩 등의 재발급, 서비스를 이용 중인 스마트폰의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명의변경 및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 회원은 사전에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모바일현금카드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모바일현금카드를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CD/ATM에 의한 거래)**

- ① 회원은 모바일현금카드로 은행 및 국내의 현금카드 취급은행이 설치한 CD/ATM 및 은행과 제휴한 기관(이하 "CD/ATM 운영기관"이라 합니다)의 CD/ATM을 이용하여 계좌의 현금 입. 출금, 잔액조회, 계좌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거래 시마다 CD/ATM 운영기관은 CD/ATM에 의해 소정의 거래명세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회원에게 교부해 드립니다. 다만,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③ 모바일현금카드를 이용한 CD/ATM 이용시간, 출금(이체)한도 및 연속이용 가능 횟수는 CD/ATM 운영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④ 기기의 고장, 정전 등으로 기기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CD/ATM 운영기관은 일시적으로 모바일현금카드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결제 및 거래취소)**

- ① 회원은 가맹점에서 모바일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회원이 모바일현금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금을 회원의 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결제하고 출금사실을 회원의 계좌에 기록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의 카드 이용 후 이용대금이 회원의 계좌에서 자동출금되어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회원이 반품, 취소 등의 이유로 가맹점과 합의하여 해당거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 가맹점의 모바일현금카드 처리 단말기(온라인 가맹점의 경우 온라인결제 프로그램)를 통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금액은 제14조 제1항의 계좌로 즉시 입금됩니다.
- ④ 제3항에서 가맹점 단말기 고장, 은행의 기술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말기에 의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직접 대금환불 받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은행은 동 처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제19조(이용한도)**

모바일현금카드의 이용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구분	1회 한도	1일 한도
CD/ATM이용	주)	주)
오프라인결제	10원~500만원	2천만원 이하
온라인결제	50원~30만원 미만	
주) CD/ATM 이용한도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는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 CD/ATM에 게시합니다. (CD/ATM 이용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은행 홈페이지의 "현금카드 회원(이용)약관" 및 자주묻는질문(FAQ)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0조(카드의 사용 중지)**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좌비밀번호의 오류 입력횟수 초과
- 2. 지갑비밀번호를 일이자 및 거래은행과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5회 이상 오류 입력
- 3. 출금(이체)한도 또는 현금카드 결제 이용한도 초과

4. 사고신고계좌
5. 법적제한계좌
6.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7.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제21조(수수료)**

- ① 은행은 모바일현금카드 발급 및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웹페이지 또는뱅크월렛에 게시합니다. 다만, 은행이 사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불구하고 CD/ATM 거래 수수료는 CD/ATM 운영기관의 이용안내문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수료의 변경 및 기타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은행은 이를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하여 수수료를 변경 및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22조(변경, 사고신고 등)**

-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 중인 스마트폰 및 “USIM칩 등”의 분실·도난, 지갑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OTP,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각종 “인증수단”의 누설·노출 등 사고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은행에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고해야 하며 그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깁니다.
-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모바일현금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제16조 제2항에 의한 해지사유 발생 시, 서비스의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새로운 USIM칩 등에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제5조의 절차에 준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원 본인이 은행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3조(면책)**

- ①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22조 제1항의 분실, 도난 등 사고신고를 지연한 경우, 은행은 사고신고 전에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회원의 모바일현금카드 이용 시 회원이 입력한 지갑비밀번호 등 각종 비밀번호와 회원이 신고한 비밀번호를 대조하여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허용하며, 은행이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 이외 제3자의 모바일현금카드 애플릿 위, 변조, “뱅크월렛” 시스템 장애 및 시스템 보안성 취약 등으로 인하여 모바일현금카드 관련 거래 처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은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은행이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인 스마트폰 및 “USIM칩 등”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스마트폰 및 “USIM칩 등”이나 지갑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OTP,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각종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USIM칩 등”, “인증수단”을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④ 스마트폰 또는 USIM칩 등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뱅크머니

**제24조(뱅크머니 발급)**

- ① 뱅크머니는 은행이 정하는 뱅크머니 발급 대상 예금계좌와 연결하여 발급됩니다.
- ② 은행의 뱅크머니를 발급받는 경우 발급 가능 매수의 제한으로 인하여 다른 은행의 뱅크머니를 발급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25조(이용한도)**

뱅크머니의 이용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구분	1회 한도	1일 한도
충전	200만원	주)
오프라인결제	잔액범위 내	잔액범위 내
온라인결제	잔액범위 내 (30만원미만)	잔액범위 내

친구에게 보내기	30만원	30만원
친구로부터 받기	30만원	200만원
환불 (“내계좌로”)	잔액범위 내	잔액범위 내
주) 1일 충전한도는 없습니다. 다만,뱅크머니의 최대 충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 제26조(뱅크머니 해지)

- ① 뱅크머니의 이용 중지를 원하는 회원은 웹페이지와 뱅크월렛을 통해 뱅크머니 잔액이 0원임을 확인한 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웹페이지 및 뱅크월렛을 통해 안내합니다.
- ② 회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뱅크머니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뱅크머니를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NFC형 뱅크머니의 경우 USIM칩 등의 재발급, 서비스를 이용 중인 스마트폰의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명의변경 및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
  2. 네트워크형 뱅크머니의 경우 스마트폰 번호 변경, 서비스를 이용 중인 스마트폰의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명의변경 및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
- ③ 은행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뱅크머니 잔액을 회원 명의의 계좌로 환급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뱅크머니를 사용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 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감독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3.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회원이 사망한 경우
  5. 회원의 서비스 이용계좌의 상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사고 신고 계좌
    - 나. 법적 지급제한 계좌
    - 다.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계좌
    - 라. 발급기준일을 당일로 하여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 마. 은행이 정한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계좌
    - 바.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록계좌
- ④ 은행은 회원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이거나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은행은 서비스 제공정책 변경, 경영상의 판단 등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이 가입시 작성한 전화번호로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종료로 회원이 계속하여 서비스 이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서비스 종료를 사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해지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뱅크머니 잔액을 회원 명의의 계좌로 환급하고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27조(충전)

- ① 회원은 가치저장단말기를 이용하여 뱅크머니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가치저장을 통해 계좌에서 출금되어 충전이 완료된 금액에 대하여는 예금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28조(충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은행은 회원의 충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지갑비밀번호, 뱅크머니PIN, 계좌비밀번호의 오류 입력 횟수 초과
2. 뱅크머니 발행권면 최고한도 초과
3. 뱅크머니가 사고 신고된 경우
4. 계좌 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5. 계좌의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경우
6. 기타 가치저장이 불가능한 기술적, 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29조(환불)

- ① 은행은 회원이 정당한 뱅크머니를 제시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원이 환불 요청한 금액과 환불수수료를 뱅크머니로부터 차감하고 환불 요청금액을 출금했던 계좌와 같은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다만, 뱅크머니의 잔액이 환불수수료보다 적은 경우 환불요청이 제한됩니다.
- ②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이 뱅크머니 잔액을 청구하는 때에는

뱅크머니가 수록된 USIM칩 등을 회수하고 잔액을 지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뱅크머니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③ NFC형 뱅크머니가 탑재된 USIM칩 등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잔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USIM칩 등을 회수하고 가맹점의 대금 청구와 이에 따른 결제 등의 절차에 따라 잔액이 확인된 후 환불하여 드립니다.

### 제30조(친구에게 보내기, 청구하기)

- ① 회원은 제25조의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뱅크머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친구에게 보내기를 통하여 다른 회원에게 보낼 수 있으며, 보내기 요청 즉시 보내는 금액과 수수료가 회원의 뱅크머니에서 차감됩니다.
- ②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보낸 뱅크머니는 받은 회원의 뱅크머니 대기상태로 표시되며, 받은 회원이 이를 확인하여 수취하면 뱅크머니 잔액이 증가합니다. 받은 회원이 수취하기 이전까지 보낸 뱅크머니는 보낸 회원의 소유이며, 보낸 회원은 친구에게 보내기 취소가 가능합니다.
- ③ 회원은 비회원에게도 제1항에 따라 친구에게 보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회원이 해당 자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정한 일정기간 내에 제5조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고 은행이 정한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미가입 등 수취인이 제5조의 이용신청 및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정상 수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거래는 은행에서 정한 일정기간 후에 자동으로 취소처리 되며, 친구에게 보내기 요청 회원의 계좌로 친구에게 보내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 ⑤ 회원은 친구에게 보내기 이용 시 상대방의 정보를 정확히 선택, 확인 또는 입력하여야 합니다.
- ⑥ 친구에게 보내기를 통해 받은 금액은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의 경우 익영업일(은행간 정산 처리 후)부터 가능합니다.
- ⑦ 회원은 다른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충전된 뱅크머니 이전을 요청하는 청구하기를 할 수 있으며 청구 한도 등의 정책은 친구에게 보내기와 동일합니다.

### 제31조(자동충전)

- ① 회원은 계좌를 이용하여 뱅크머니 자동충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충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내에서 사전에 자동충전 조건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② 제2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충전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은행이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자동충전 미실행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32조(결제 및 거래 취소)

- ① 회원은 뱅크머니 가맹점 어디에서나 뱅크머니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뱅크머니 이용 후 이용대금이 회원의 뱅크머니에서 차감되어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회원이 반품, 취소 등의 이유로 가맹점과 합의하여 해당거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 가맹점의 뱅크머니 처리단말기(온라인 가맹점의 경우 온라인결제 프로그램)를 통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금액은 제24조 제1항의 계좌로 다음 각 호의 시점에 입금됩니다.
  1. 거래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 취소일의 익영업일
  2. 거래당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취소일로부터 4영업일 이내
- ③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뱅크머니 거래의 경우 단말기 조작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구매 이후 해당 단말기에서 다른 거래가 없는 경우 뱅크머니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의 뱅크머니로 대금환불됩니다.
- ④ 제2항에서 가맹점 단말기 고장, 은행의 기술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말기에 의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직접 대금환불 받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은행은 동 처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 제33조(수수료)

- ① 은행은 뱅크머니를 발급할 때 회원으로부터 발급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회원이 뱅크머니를 충전하거나 환불할 때 회원으로부터 충전수수료 또는 환불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회원이 친구에게 보내기를 이용할 때 친구에게 보내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웹페이지 또는 뱅크월렛에 게시합니다. 다만, 은행이 사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⑤ 제4항의 수수료의 변경 및 기타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은행은 이를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하여 수수료를 변경 및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제34조(뱅크머니의 사용 중지)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뱅크머니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지갑비밀번호를 일자 및 거래은행과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5회 이상 오류 입력

- 2.뱅크머니PIN을 일자와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5회 이상 오류 입력
3. 제35조 제1항에 의거 사고 신고된 네트워크형 뱅크머니의 경우

**제35조(변경, 사고신고 등)**

-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 중인 스마트폰 및 “USIM칩 등”의 분실·도난, 지갑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OTP,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각종 “인증수단”의 누설·노출 등 사고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은행에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고해야 하며 그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깁니다.
-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뱅크머니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제26조 제2항에 의한 해지사유 발생 시, 서비스의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새로운 스마트폰 및 USIM 칩 등에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제5조의 절차에 준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원 본인이 은행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36조(면책)**

- ① 은행은 회원의 뱅크머니 이용 시 회원이 입력한 지갑비밀번호 등 각종 비밀번호와 회원이 신고한 비밀번호를 대조하여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허용하며, 은행이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 이외 제3자의 뱅크머니애플릿 위. 변조, “뱅크월렛” 시스템 장애 및 시스템 보안성 취약 등으로 인하여 뱅크머니 관련 거래 처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은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은행이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 중인 스마트폰 및 “USIM칩 등”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스마트폰 및 “USIM칩 등” 이나 지갑비밀번호, 뱅크머니 PIN, 계좌비밀번호, OTP,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각종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USIM칩 등”, “인증수단”을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③ 제35조 제1항의 분실 또는 도난 등 사고신고 당시 NFC형 뱅크머니에 이미 충전되어 있던 금액에 대하여 은행은 현금의 분실 또는 도난에 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해당 뱅크머니에 대하여 충전을 제한합니다.
- ④ 네트워크형 뱅크머니를 발급받은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35조 제1항의 분실·도난 등 사고 신고를 지연한 경우, 은행은 사고신고 전에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⑤ 스마트폰 또는 USIM칩 등의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6장 부가서비스

**제37조(멤버십 서비스)**

- ① 회원은 뱅크월렛에서 멤버십제공자의 멤버십 중 발급하고자 하는 멤버십을 선택하여 해당 모바일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멤버십별로 가입 시 동의해야 하는 멤버십의 약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 및 은행이 위탁한 제3자는 회원이 멤버십 가입신청 시 멤버십제공자의 사용자 인증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고객정보를 멤버십제공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 및 은행이 위탁한 제3자는 뱅크월렛을 통하여 제휴 멤버십의 안내 및 등록을 위한 화면만 제공하며, 해당 멤버십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서비스 가입 시 해당 멤버십 제공자와 정한 약정 등에 따릅니다.
- ⑤ 은행 및 은행이 위탁한 제3자는 회원과 멤버십 제공자 간의 멤버십 서비스 이용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8조(쿠폰 서비스)**

- ① 회원은 쿠폰을 다운로드받아 쿠폰 제공자가 지정한 사용처에서 할인 또는 무료 혜택의 쿠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 및 은행이 위탁한 제3자는 뱅크월렛을 통하여 쿠폰정보 및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회원에게 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제공되는 쿠폰 내용과 사용에 따른 책임은 회원이 서비스 가입 시 해당 제휴사와 정한 약정 등에 따릅니다.
- ③ 다운로드 받은 쿠폰은 각 쿠폰마다 고유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는 쿠폰에 대해서는 은행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39조(포인트 서비스)**

- ① 은행 및 은행이 위탁한 제3자는 제휴사의 포인트 서비스 안내 및 사용을 위한 화면으로 연결하는 역할만 담당하며, 포인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서비스 가입 시 해당 제휴사와 정한 약정 등에 따릅니다.
- ② 은행 및 은행이 위탁한 제3자는 특정 제휴사가 뱅크월렛을 통하여 결제한 회원에게 포인트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제휴사에게 포인트 적립 관련 회원의 구매정보(물품명, 가맹점명,

구매일시, 포인트 적립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 및 은행이 위탁한 제3자는 회원과 제휴사 간의 포인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40조(선물하기)

- ① 은행 및 은행이 위탁한 제3자는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선물하기 이용을 위한 화면으로 연결하는 역할만 담당하며, 선물하기 제공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서비스 가입 시 해당 제휴사와 정한 약정 등에 따릅니다.
- ② 은행 및 은행이 위탁한 제3자는 회원과 제휴사 간의 선물하기 이용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7장 기타

#### 제41조(대리 및 보증의 부인)

- ① 은행은 본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에서 회원, 가맹점 또는 부가서비스 제공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② 은행은 회원과 가맹점 간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이용과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등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 제42조(약관의 변경)

- ① 은행은 서비스에 새로운 업무의 적용, 기능의 삭제,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기타 은행의 업무상 약관을 변경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은행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 30일 전에 변경된 약관의 적용 일자와 변경 사유, 변경 내용을 웹사이트 또는뱅크월렛에 30일간 게시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기간 서비스 내 SMS, Push Message, 전자우편, 모바일메신저 메시지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명확히 통지합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할 경우 “회원이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 ③ 은행은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43조 (개인정보 등의 처리)

- ① 은행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회원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휴사, 가맹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그가 받게 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에 따라 정합니다.
- ③ 은행이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인지 또는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는 은행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의해 관리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 ④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의 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법령 등에서 회원의 개인정보 이용,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3. “친구에게 보내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상대방 확인을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실명 일부를 마스킹하여 서비스 화면에 표시하는 경우
- ⑤ 은행은 “친구에게 보내기”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해당 서비스 관련 메시지를 이동통신사, 모바일메신저 사업자 등을 통해 발송하며, 동 메시지는 “친구에게 보내기” 서비스 이용 회원 당사자 간에만 송·수신되고 제3자에게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 제44조 (민원처리)

은행은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객의 민원에 대하여 제휴사와 협력하여 신속히 접수 및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45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법률의 시행령 및 고시 외에 금융결제원 모바일공동업무 규약에 따르며, 은행은 본 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46조(관할법원)**

본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2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